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2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6. 5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범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, 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하는 등 복지·보건·고용·주거·문화 등 종합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직 5급 증원 : 1명

○ 주민생활지원과 신설

나. 일반직 6급 증원 : 10(동사무소 +22, 구 본청 -12)

○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(22담당)

다. 일반직 8급 정원조정 : 구 본청 +16, 동 -16

라. 일반직 9급 정원조정 : 구 본청 + 4, 보건소 +2, 동 - 6

마. 기능직 10급 감원 : 11명

○ 기능직 정원이 총 정원의 26%(기준 20%이내)로 정원을 감원 조정

바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 처리규칙」에 의거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문에 낫표(「」) 사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03조(지방공무원단체의 공무원)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0조
(직급별 정원)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 제8조(정원책정기준)
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-1220(2006. 4. 5)호
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계획
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-1428(2006. 4.19)호 :
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 처리규칙

나. 예산조치 : 확보되었음

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참고사항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06. 5. 10~5.30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[별표1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 총계란 중 구분청 “975(6)”를 “973(6)”으로 하고, 보건소 “92”를 “94”로 한다.

일반직계란 중 총계 “949(6)”를 “960(6)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644(6)”를 “653(6)”으로 하고, 보건소 “79”를 “81”로 한다.

일반직 5급 소계란 중 총계 “59”를 “60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25”를 “26”으로 한다.

일반직 6급 소계란 중 총계 “176(1)”을 “186(1)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136(1)”을 “124(1)”로 하며, 동 “22”를 “44”로 한다.

일반직 8급 구분청 “204(2)”를 “220(2)”으로 하고, 동 “81”을 “65”로 한다.

일반직 9급 구분청 “73”을 “77”로 하고, 보건소 “5”를 “7”로 하고, 동 “43”을 “37”로 한다.

기능직계란 중 총계 “344”를 “333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324”를 “313”으로 한다.

기능직 10급 소계란 중 총계 “187”을 “176”으로 하고, 구분청 “175”를 “164”로 한다.

※ ()는 한시정원으로, 총계에 포함한 정원임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[별표 1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총계		구분청		구의회 사무국		보건소		동	
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
총 계	1,306(6)	1,306(6)	975(6)	973(6)	27	27	92	94	212	212
정무직 계	1	1	1	1						
구청장	1	1	1	1						
일반직 계	949(6)	960(6)	644(6)	653(6)	14	14	79	81	212	212
3급	1	1	1	1						
4급	7	7	5	5	1	1	1	1		
5급	59	60	25	26	2	2	10	10	22	22
6급	176(1)	186(1)	136(1)	124(1)	3	3	15	15	22	44
7급	273(3)	273(3)	200(3)	200(3)	4	4	25	25	44	44
8급	310(2)	310(2)	204(2)	220(2)	2	2	23	23	81	65
9급	123	123	73	77	2	2	5	7	43	37
별정직 계	12	12	6	6	6	6				
6급상당	1	1	1	1						
7급상당	7	7	5	5	2	2				
8급상당	3	3			3	3				
9급상당	1	1			1	1				
기능직 계	344	333	324	313	7	7	13	13		
기능6급	8	8	8	8						
기능7급	18	18	18	18						
기능8급	44	44	42	42			2	2		
기능9급	87	87	81	81	3	3	3	3		
기능10급	187	176	175	164	4	4	8	8		

※ ()는 총계에 포함한 정원이며, ()는 한시정원임

[별표 1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	총계	구분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306(6)	973(6)	27	<u>94</u>	212
정무직 계	1	1			
구청장	1	1			
일반직 계	960(6)	653(6)	14	<u>81</u>	212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<u>60</u>	<u>26</u>	2	10	22
6급	<u>186(1)</u>	<u>124(1)</u>	3	15	<u>44</u>
7급	273(3)	200(3)	4	25	44
8급	<u>310(2)</u>	<u>220(2)</u>	2	23	<u>65</u>
9급	123	<u>77</u>	2	<u>7</u>	<u>37</u>
별정직 계	12	6	6		
6급상당	1	1			
7급상당	7	5	2		
8급상당	3		3		
9급상당	1		1		
기능직 계	<u>333</u>	<u>313</u>	7	<u>13</u>	
기능6급	8	8			
기능7급	18	18			
기능8급	44	42		2	
기능9급	87	81	3	3	
기능10급	<u>176</u>	<u>164</u>	4	8	